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26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11. 2.
판 결 선 고	2016. 12. 16.

주 문

1.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8,922,960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7,784,59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042,950원의 각 부과처분, 농어촌특별세 2,223,070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86,7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B는 1998. 4. 1.부터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및 스포츠 레저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11. 20. 위 사업을 폐업하였고, 2012. 11. 21. 설립 중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redacted]구 D 대 8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2층 지하11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4,920.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B가 위 상호로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현물출자하였다. 원고는 2012. 12. 10. 설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 본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12. 18. 취득세 1,158,364,680원을 면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이하 '쟁점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E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쟁점 건물 부분을 무상으로 점유·사용하면서 E은 자전거 세척업 및 음료 판매업을 영위하고 F은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10. '원고가 E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 건물 부분을 임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 규정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8,922,960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7,784,59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042,950원의 각 부과처분, 농어촌특별세 2,223,070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86,7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징수처분과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 5,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추징 대상 해당 여부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 규정된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가) 지방세법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임대'에 무상 임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취득세 추징사유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 규정된 '임대'는 민법상 '임대차'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세 추징사유인 '임대'가 무상 임대를 포함한다면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 그런데 원고가 E 등에게 쟁점 건물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민법상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에 해당한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취득세 추징사유로 '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을 규정한 것의 입법취지는,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 받아 면세 혜택을 받은 법인이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여 제3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함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E 등에게 쟁점 건물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므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본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①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고, ② 개인 명의의 재산을 법인 명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어 세수를 용이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단서는 이러한 취득세 면제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32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8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그 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①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또는 ②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과세관청은 그 법인이 면제받은 취득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E 등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쟁점 건물 부분을 사용하게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쟁점 건물 부분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사유인 '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제8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등의 무상임대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특례' 등과 같은 문언이 사용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부칙(제11873호, 2013. 6. 7.) 제8조 참조]. 따라서 조세법에서의 '임대'의 개념을 민법상 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조세법에 규정된 '임대'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본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이러한 취득세 면제의 혜택은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아니라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만 부여된다.

그런데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더 이상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앞서 본 취득세 면제의 기초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할 필요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3)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① 해당 사업을 폐업하여 해당 사업용 재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지 않거나, ② 해당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소유하지 않거나, ③ 해당 사업용 재산을 소유하더라도 타인에게 이를 임대한다면, 그 재산을 더 이상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이처럼 사후적으로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 재산을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그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든 지급받지 아니하든 해당 재산을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는 취득세 추징사유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분'은 매매와 같은 유상 행위나 증여와 같은 무상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단서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추징사유인 '임대'는 위 '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 규정된 '임대' 또한 유상 임대(민법상 임대차)와 무상 임대(민법상 사용대차)를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면제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중 쟁점 건물 부분에 상응하는 취득세 및 이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납세고지의 하자 유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1)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2호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원고, 과세대상으로 쟁점 건물 부분, 세목으로 취득세와 농특세가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취득세의 과세표준,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본세 및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합계액, 농어촌특별세 본세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과세예고 통지서에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추징하는 법령상 근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취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납부)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율,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만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의 합계액,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을 구분하지 않았고,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 각각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기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지 않은 점, ③ 피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부하기 전인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과세예고 통지서에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는 점, ④ 과세예고 통지서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산세 각각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지방세면제)

⑧ 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지방세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6.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7조(신고・납부 등)

④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